

[별표 6] <개정 1995.10.5>

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(제35조제4항관련)

1. 도 로

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(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로 하되,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.

2. 상하수도시설

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·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,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.

3. 전기시설

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.

4. 가스공급시설

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. 다만, 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(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한다)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.

5. 통신시설 (세대별전화시설)

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, 케이블 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. 다만,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·보수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6. 지역난방시설

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(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)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